안양시 명예시민과장 운영 규정

제정 2009. 10. 13 훈령 제539호 일부개정 2019. 9. 9 훈령 제701호(안양시 훈령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규정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시·구청 종합민원실과 민원서비스센터에서 민원안내 등 섬김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명예시민과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임무) 명예시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- 1. 시ㆍ구청 종합민원실내 민원안내
 - 2. 민원서비스센터 근무
 - 3. 시정시책 홍보 및 시민불편사항 건의
- 제3조(위촉) ① 명예시민과장은 시정에 관심이 많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시 본청은 시장이, 구청은 구청장이 위촉한다.
 - ② 명예시민과장은 시 본청은 62명 이내, 구청은 45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제4조(임기) ① 명예시민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명예시민과장이 사임하거나 사망, 질병, 그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 - ③ 삭제 <2019. 9. 9>
- 제5조(예산지원) 명예시민과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명예시민과장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9. 9. 9 훈령 제701호, 안양시 훈령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양시 명예시민과장 운영 규정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